

## 입원료 심사지침 질의·응답(연번3, 4)에 대한 추가설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제2022-103호(2022.05.01.시행) 관련]

입원료 심사지침 질의·응답 연번 3, 4번과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일부 혼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 질의·응답 관련>

연번	질의	답변
3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입원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라, <b>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입원한 환자</b> 에게 <b>환자상태의 지속적 관찰이나 응급상황</b>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4	야간에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b> 간호조무사만 상주하는 경우 <b>입원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b> .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관찰 업무를 수행했다면 <b>입원료 산정 가능합니다</b> .

- (연번3) 입원은 환자의 의료적 필요도 및 의사의 전문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입원환자는 의료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찰이 요구되며, 상태변화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입원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입원환자 응급상황 발생 조치 등을 위해서 의료기관별로 의료인 배치하거나, 적절한 환자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상주」는 환자상태 변화, 응급상황 등 발생 시에 즉시 환자를 관찰하고 대처 할 수 있는 의료인 배치 또는 On-call 등 환자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변4)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또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100% 또는 50% 이내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대체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정원>

입원환자 수	간호조무사 정원 <sup>주)</sup>
5인 이상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담당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 이내

주) 관련근거: 보사부 고시 제90-26호(1990.3.23.시행)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의 입원환자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 등의 지도(감독)’ 취지하에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 지도(감독)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주」의 의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붙임 참조)

- 「의료법」 제2조(의료인), 동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별표5
-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보사부 고시 제90-26호, 1990.3.23.)

[붙임]

## 의료인 관련 의료법 등 규정 안내

관련 법령	내용
의료법 제2조 (의료인)	<p>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b>의사·치과의사·한 의사·조산사 및 간호사</b>를 말한다 &lt;개정 2008.2.29., 2010.1.18.&gt;</p> <p>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p> <p>1.~ 4. ~생략~</p> <p>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p> <p>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p> <p>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p> <p>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p> <p>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p>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p>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 이하 생략~</p>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p>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lt;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2019. 4. 23., 2019. 8. 27.&gt;</p> <p>1. ~ 4, 생략</p> <p><b>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b></p> <p>~이하 생략 ~</p>
의료법 제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p>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b>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할수 있다</b></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p>① 법 제36조제5호에 따른 <b>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b></p> <p>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lt;개정 2008. 9. 5., 2010. 1. 29., 2010. 3. 19., 2015. 5. 29., 2018. 12. 20.&gt;</p> <p>~~ 1.~4 생략 ~~~.</p> <p>5.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p> <p>~~ 이하 생략 ~~</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0. 3. 19.&gt;</p>

관련 법령	내용
고시	<p>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보사부 고시 제90-26호, 1990.3.23.시행)</p> <p>의료법시행규칙(별표4)의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을 정원중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원환자 5인 이상을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b>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b></li> <li>2.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치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서는 <b>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b></li> </ol>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5.29.>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사	의사의 경우와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과 같음
조산사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됨)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병원과 같음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 원
간호사 (치과 의 료 기관 의 경 우 에 는 치과 위 생 사 또는 간 호사)	연평균 1일 입 원환자를 2.5명 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 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 은 입원환자 1 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 음	종합병원과 같 음	연평균 1일 입 원환자를 5명 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 자 12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 원환자 6명마 다 1명 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 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 은 입원환자 1 명으로 환산함	종합 병원 과 같 음	종합 병원 과 같 음	한 방 병 원 과 같 음